####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 일 이상 89 일 이하인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제도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 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 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 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제도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 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 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 억원, 담보채무 15 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 개월(90 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 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9 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0 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 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 일 이상 89 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 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9 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0 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 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이자율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 3.25%, 최고 8%)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 년, 담보채무 최장 35 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취업프로그램\*을 이수 후 1 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자는 최저이자율 3.25% 적용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 신속채무조정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 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 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 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9 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0 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 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 일이상	연체기간 31 일~89 일	연체기간 30 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 억 담보 15 억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사업자 30 억)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변제기간	-	3~5 년	10 년 이내 (담보 35 년)	10 년 이내 (담보 35 년)	10 년 이내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단,카드 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 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 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1 년간	미등록	미등록

#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청(법률자문) 비용	비용 과다(80~200 만원)	비용 저렴(5 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 중지	약 1 개월~2 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신청 절차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 개월)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 개월)
신청 서류	서류 복잡	서류 간편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소액채무 조정여부	기각될 가능성 높음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생계비 인정범위	만 19 세 이상 만 65 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신청 접근성	전국 14개 관할 법원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공공기록 등재 여부	개인회생 - 3~5 년 개인파산 - 5 년	채무조정 - 1 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신용상담여부	없음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신용도 상승	3~5 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제한	이용 가능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 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41% 감면)
상환 기간	단기 상환(3~5년)	장기 상환(10년 이내)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지원 여부	채권자 동의 불요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 지원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 세 이상 고령자 등 29 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ㆍ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ㆍ채무부담액이 2 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 년, 15 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 세 이상 고령자 등 29 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 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 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 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